

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 청년(체험형)인턴 일반전형 채용 공고

“일하는 삶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”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에서 근무할 역량 있는 직원을 모집합니다.

2025년 5월 9일

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

1. 채용개요

- 채용유형 및 인원: 청년(체험형)인턴 총 1명

구분	사무원
태백요양병원	1

※ 소속기관 간 중복지원 불가(응시는 1개 기관으로만 가능)하며,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 분야 전체를 불합격 처리

※ 응시원서 상단의 응시기관란에 희망 근무기관 기재([태백요양병원의 경우 희망 근무지 태백 요양병원 필히 기재](#))

- 근무기관: [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](#)

소속병원	주소	전화번호
태백요양병원	[26052]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드미길 8(장성동)	033-580-3704

2.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

- 응시자격 ※ 별도 기준시점 명시 외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

구 분	응시자격
공통자격	○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

구 분	응시자격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(복무기간) 1년 미만 1세, 1년 이상 2년 미만 2세, 2년 이상 3세 ※ 단, 야간접수수납원 직렬의 경우 야간 및 휴일근무가 가능해야하므로 「근로기준법」 제70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자만 지원 가능 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○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※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 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10년) ○ 우리 공단 청년(체험형)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○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학업병행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등 조정 불가 ○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	
일반전형 직렬별 자격요건	사무원	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

□ 근무조건

구 分	주요내용
채용유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년(체험형)인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없이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
근무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용일 ~ 6개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산업위생사 직렬의 경우 업무관련성특별진찰 업무수행 예정으로 기관 운영상 8개월 근무
근무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 5일, 1일 6시간 또는 8시간 시간선택제 근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자기계발 기회 확대를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 실시(단, 야간접수수납원과 산업위생사 직렬의 경우 병원 운영상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변동)

구 분	주요내용
근무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(태백요양병원)
보수수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월 1,715천원 수준(기본급 및 식대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사무원 1일 6시간 근무 기준이며 근무시간에 따라 변동 ※ 전문자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업무수행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수준으로 책정 ※ 야간접수수납원 직렬의 경우 야간,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별도 지급
수행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무지원, 의료지원, 병동지원, 시설 및 환경 업무지원 등
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「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·복무 등 운영세칙」 등 공단 관련 규정 적용

3. 채용절차 및 일정

채용절차



채용일정

전형절차	일정
응시원서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25. 5. 9.(금) ~ '25. 5. 19.(월) 17:30
서류전형 합격자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25. 5. 21.(수)
면접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25. 5. 22.(목) ~ '25. 5. 23.(금)
최종합격자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25. 5. 28.(수)
임용후보 등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25. 5. 28.(수) ~ '25. 6. 4.(수)
임용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25. 6. 11.(수)

※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. 응시원서 접수

□ 접수기간 : 2025. 5. 9.(금) ~ 5. 19.(월) 17:30

- 제출서류: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각 1부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마감 당일 17시30분까지 도착·수신분에 한함)

[이메일 전송 관련 유의사항 안내(예시)]

- ① (메일제목) 응시원서 제출[홍길동-OO병원, 청년인턴(사무원)]
- ② (붙임 PDF파일명) [홍길동-OO병원, 청년인턴(사무원)]

◇ 제출서류를 PC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응시원서 하단에 서명(날인) 후 스캔 → 1개의 PDF 파일로 변환

※ 소속, 학교 등을 알 수 있는 메일 사용불가, 포털메일 사용(예. 네이버, 다음 등)

- 접수처: 소속기관 인사담당

소속기관	전화번호	이메일주소
태백요양병원	033-580-3704	taebaekyy9in@comwel.or.kr

5. 서류전형

□ 합격자 발표 : 2025. 5. 21.(수) 예정 ※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안내

- 서류전형 합격자: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* 최하위 동점자 전원 선발

구 분	내 용
정량평가 (100점 만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 부여 ※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이며,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• 전산자격(35점), 전문자격(35점), 한국사자격(10점), 국어능력(20점)
사회형평요소우대 (최대가점 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사회형평요소 항목별 점수를 서류전형(100점 만점) 합산점수에 가산• 취업지원대상자(5점, 10점), 장애인, 산재, 의상자, 기타(3점, 5점)

□ 서류전형 항목별 배점 및 내용

구 분	내 용
전산자격(3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정보처리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, 정보처리산업기사, 사무자동화 산업기사, 워드프로세서(워드프로세서 1급 포함)
전문자격(3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, 사회복지사 2급 이상, 직업상담사 2급 이상, 전산회계운용사 3급 이상, 보험심사관리사 1급, 투자자산 운용사, 펀드투자상담사(펀드투자권유대행인,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)
한국사자격(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한국사능력검정
국어능력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한국어능력시험, 한국실용글쓰기검정

※ 각 평가항목 내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

□ 사회형평요소 우대

항목/점수		세부평가기준
취업지원 대상자*	1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%를 가점하는 자
	5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%를 가점하는 자
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	5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
	3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
장애인	5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
의사상자	5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상자 자녀
생활보호 대상자	5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자
경력단절 여성	5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의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 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(공고일 기준 무직인 상태)
기타	5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•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•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(자립준비청년)* <p>*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에 따른 청년에 한함</p>

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

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

※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름

- 모집단위별(경쟁유형 · 직렬 · 권역)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(예외: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) 가점 부여,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

※ 사회형평요소 우대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

6. 면접전형

□ 면접전형 : 2025. 5. 22.(목) ~ 5. 23.(금) 예정

○ (대상자) 서류전형 합격자

○ (장소) **태백요양병원**

※ 면접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과 증빙서류 지참

※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, 구체적 전형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

○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배점: 집단 또는 개별 면접 실시

- NCS 분류체계에 따른 직무기술서상을 바탕으로 직업기초능력(의사소통, 대인관계), 직무수행능력(도전정신, 전문성, 직업윤리, 자기개발) 등 평가
- 면접 평균점수(가점 포함) 5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

□ 사회 형평요소 우대

항목/점수		세부평가기준
취업지원 대상자*	10점	•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%를 가점하는 자
	5점	•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%를 가점하는 자

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

※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름

- 모집단위별(경쟁유형 · 직렬 · 권역)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(예외: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) 가점 부여,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

증빙서류 제출 (면접전형 시 반드시 지참)

지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, 채용 관련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직접 제출

구분	제출 서류	발급 유효기간
공통 사항	① 주민등록초본 1부 ② 병적증명서 1부(남성의 경우에 한하여, 세부항목 모두 필수 기재) ③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	서류검증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
서류 전형	① 해당 채용분야 면허(자격)증 사본 1부 * 사무원 및 야간접수수납원 직렬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② (자격사항) 전산자격증, 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 관련 자격인증서, 국가 기술자격증 및 전문자격증	기한 없음
우대가점 (사회형평적 요소 등 해당자에 한함)	① (취업지원대상자) 취업지원(국가보훈) 대상자 증명서 ② (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)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*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 (장애인) 장애인증명서(지자체발급) ④ (의사상자) 의사상자 증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 *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⑤ (생활보호대상자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증빙 서류 사본 ⑥ (경력단절여성)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, 가족관계증명서 ⑦ (다문화가족)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* 가족관계증명서, 부모 혼인관계증명서, 부 또는 모(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(혼인한 외국인의 이전 국적 표시), 부 또는 모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원본 ⑧ (북한이탈주민)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⑨ (자립준비청년) 자립수당 수급자확인서, 보호종료확인서	서류검증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

※ 다만 해당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명시한 경우 그 기간 인정

※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지참

7. 최종합격자 발표

합격자 발표: 2025. 5. 28.(수) 예정 *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

○ (선발기준) 서류검증 결과 결격(부적격) 사유가 없고, 가산점수*를 포함한 면접전형 평균 5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

- ※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름
- 모집단위별(경쟁유형 · 직렬 · 권역)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(예외: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) 가점 부여,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
-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유효기간 내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또는 퇴사 시 공단사정에 따라 후보합격자 임용 가능

8.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

- 임용등록 기간 : 2025. 5. 28.(수) ~ 6. 4.(수) 예정
- 임용등록 시 제출서류: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및 각서 등
※ 공단 소정양식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 시 공지
-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소속병원에서 실시
- 임용일: 2025. 6. 11.(수) 예정 ※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

9. 기타 유의사항

-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응시자격 및 자격(면허)증 유효여부 등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-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, 출신학교명, 출신지역명, 가족 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에 따라 수집,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 정보 및 입사지원서 이메일,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, 가족관계, 출신지,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(직 · 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-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‘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’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,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

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최종합격자의 경우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,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 9호,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 제30조(신체검사) 3항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, 180일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.
※ 단,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응시자(탈락자 포함)에게 [붙임 2-3] 서식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성명, 연락처, 이메일을 전형단계별 평정표에 기록하여 영구 보관
- 입사지원자가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- * (신청방법) 채용 이의신청 양식 작성 후 접수처 이메일로 스캔본 송부
- * (이의신청 처리 예외) ① 해당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②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면접위원 등) 및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
- *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 문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하지 않음

- 부정합격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서는 합격이 취소되고,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며, 관련자는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사실 인지 시 「직원 채용업무 시행 세칙」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.

- * (신청방법) 헬프라인 레드휘슬(<http://redwhistle.org>)
- * (구제시기) 피해발생 인지 후 즉시
- * (피해자 구제)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 기회 부여

- 공단 내부규정 등에 따라 이사장의 허가 없이 겸직 및 영리활동(사업자 등록 등)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- 합격 통보된 자가 임용예정일부터 무단결근한 경우 합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, 합격포기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병원 인사담당에게 문의하거나,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 1-1] 공단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

제14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6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<신설 2016. 4. 5., 개정 2018. 5. 11., 2020. 7. 2., 2025. 2. 21.>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6의4. 공단 입사 이전 또는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
 8.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,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
 9.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1.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[붙임 1-2]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<개정 2024.12.31.>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[붙임 2-1] 응시원서

응 시 원 서

응시번호	※ 접수처 기재란		응시직렬	사무원	응시기관 (기관명기재)	태백요양병원	
성명	(한글)		(한자)				
연락처	(휴대전화)				(비상연락처)		
이메일							
응시요건 (연령) 사회형평 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34세 이하 <input type="checkbox"/> 35세 이상 <small>(□ 복무기간 가산여부)</small>			병역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군필(복무기간: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필(면제사유:)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		
	보훈대상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(가점비율 %)			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		
	산재근로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(본인 / 자녀)			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		
	의사상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(본인 / 자녀)			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		
	경력단절여성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(경력단절 시작일:)			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		
	장애인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	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		북한이탈주민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	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
	다문화가족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	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		자립준비청년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	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
차상위계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		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	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			
우리공단 인턴경험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						
자격사항							

* 채용공고문의 평가사항 항목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국가기술/전문자격,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재

* 채용공고문 자격사항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재 불요

* 급수가 있는 자격증의 경우 반드시 급수 기재 (급수 미기재시 배점 적용 불가)

*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취득된 자격증에 한해서 기재

구분	자격증명	발급기관	취득일자
전문자격 [필수]			년 월 일
한국사자격			년 월 일
전산자격			년 월 일
국어능력			년 월 일

*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는 직렬의 경우, 채용분야 면허 혹은 자격증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* (연령)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청년(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5 세 이상~34 세 이하인 자에 한함)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.

* (공단인턴) 우리 공단에서 청년(체험형)인턴으로 근무한 경우 '해당'으로, 그 외에는 '미해당'으로 선택 바랍니다.

<유의사항>

- 채용공고문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을 숙지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합격 또는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.
- 기관 중복지원 또는 정해진 응시원서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접수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.

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. .
응시자 (인)

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장 귀하

[불임 2-2] 자기소개서

자기 소개서

성명	응시분야	응시번호	※ 접수처 기재란
<p>귀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채용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열린소통, 지원분야 직무이해, 전문성, 책임감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. (필요시 별지사용 가능)</p> <p>※ 지원자 성명, 연령, 출신학교명, 출신지역명, 가족관계 등 직무평가와 무관한 사실 언급은 불가하고,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</p>			
열린소통 (공감능력, 상담능력, 협력성, 사회봉사활동 등)			
지원분야 직무이해 (지원 직무 및 사업 이해도, 직무경력)			
전문성 (자원관리능력, 직무관련 자격취득, 수상경력 등)			
책임감 (적극성, 문제해결능력 등)			

[붙임 2-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근로복지공단은 채용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주체(응시자 본인)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,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.
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

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내역

<유의사항> 응시자가 선택한 지원정보 및 가산점 정보 유무에 따라 “필수” 또는 “선택”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
《필수항목》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수집근거	보유 및 이용기간
성명, 연락처, 이메일	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,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	정보주체의 동의	영구

※ 정보주체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위 필수적 정보 수집·동의는 채용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따라서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채용심사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동의함 , 동의하지 않음)

《선택항목》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수집근거	보유 및 이용기간
교육, 경력, 자격취득 해당여부	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및 선발 참고 자료	정보주체의 동의	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80일까지

※ 정보주체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산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동의함 , 동의하지 않음)

□ 민감정보 처리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수집근거	보유 및 이용기간
사회형평(장애, 보훈 등) 해당여부	편의제공 적용여부 확인 등 채용절차 진행, 우대 및 선발 참고 자료	정보주체의 동의	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80일까지

※ 정보주체는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편의제공 및 가산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(수집·이용)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동의함 , 동의하지 않음)

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

제공받는자	제공목적	제공 항목	보유 및 이용기간
취업지원, 장애관련 제공기관, 학위수여기관, 자격증 시험 시행기관 등	입사지원서 접수 및 자격 진위여부 확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취업지원 대상 관련사항	조회결과 회신 후 즉시 폐기

※ 정보주체는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동의함 , 동의하지 않음)

20 년 월 일
응시자(본인)

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장 귀하

[붙임 3] 채용이의신청서

이의신청서			
성명		채용분야	
이메일		연락처	
이의신청 내용	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		
년 월 일			
		신청인	(인)

※ 신청 시 유의사항

-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이내 제출해야 합니다.
-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바라며,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바랍니다.
- 채용과 무관한 문의, 질의사항,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.
-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.
-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.

[붙임 4]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
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